

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

---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장 용 대

#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0년 11월 16일 김영주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며, 지원에 필요한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정하고 충청북도지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.
- 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부터 안 제9조).
-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시

장·군수 또는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).

#### 4. 검토의견

금번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

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3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추진과 실태조사를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정하고,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시장·군수 또는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 1부. 끝.